

서울특별시

우 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/ 전화 (02) 731 - 6373, 6773 / 전송 (02) 731 - 637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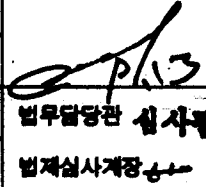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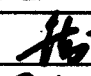

문서번호 : 건행 58150 - 2/10

시행일자 : '93. 9. 13

경 유 : (제 1 안)

수 신 : 내 부 결 재

참 조 :

| | | |
|-----|---|---|
| 위 글 | | 시 장 |
| 보 존 | |  법무담당관 심사필 법제심사계장 |
| 국 장 | (전 결) | |
| 과 장 |  | |
| 계 장 |  | |
| 기 안 | 이 대 형 | 합 조 |

제 목 :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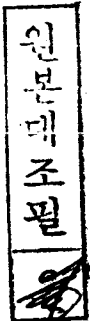
70.6/0

1. 도로법(법률 제4545호, '93.3.10) 및 같은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3958호, '93.8.14)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므로써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, 이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조례개정의 사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안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가. 입법예고안 : 별첨

나. 입법예고기간 : '93. 9. 15 ~ 9. 24(10일간)

첨부 :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.



서울특별시장

(제 2 안)

수 신 : 공보관

참 조 : 공보1담당관

제 목 :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시보게재 의뢰

1.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시보게재를 의뢰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공고안 : 별첨

137

건행 58150 -

'93. 9. 13

첨부 :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부. 끝.

도 로 국 장

(제 3 안)

수 신 : 수신처참조

제 목 :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1. 도로법(법률 제4545호, '93. 3. 10) 및 같은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3958호, '93. 8. 14)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산정기준이 변경되므로써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본 조례개정에 참고하고자 하니 '93. 9. 24 까지 건설행정과장 참조 제출하시기 바라며, 기입내 제출사항이 없으면 별도 의견 없는것으로 보아 처리할 것임.

가. 의견조회 사항 : 별첨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

첨부 :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

원본대조필

서 울 특 별 시 장

수신처 : 서기 01, 서관 01-02, 서국 01-13, 서본부 01-04, 서구 01-22(건설관리과장 참조)



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

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3 년 9 월 15 일

서울특별시

1. 개정 사유

가. 도로법(법률 제4545호, 1993. 3. 10) 및 같은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3,958호, 1993. 8. 14)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변경

나. '82. 6월 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 개정후 장기간 사용료 미조정
으로 여타 사용료징수조례와 불균형

2. 주요 골자

가. 육교사용료 조정

○ 기본 사용료(7일 이내) : 21,000원 → 30,000원

○ 기본사용일수 초과시(매 1일당) : 2,100원 → 3,000원

3. 의견 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'93. 9. 2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16절지를 세워서 작성)를 서울특별시장(참조 건설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(전화번호 : 731-6373, 731-6773)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전화번호

원본에
조필

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2]를 다음과 같이 한다

[별표2]

육교사용료산정기준표 (제9조 제3항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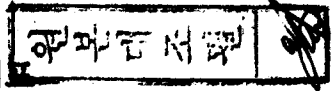
| 기본 사용료 | | 기본사용일수초과시 초과사용료 (1일당)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용기간 | 사용료 | |
| 7일 이내 | 육교 1회당 30,000원 | 3,000원 |

비고 : 1회 사용은 육교의 양면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

원본대조됨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육교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육교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



| 현 | 개정안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|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<p>[별표2] 육교사용료산정기준표 (제9조 제3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본 사용료</th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본사용일수초과시 초과사용료 (매 1일당)</th> </tr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용기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용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일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육교 1회당 21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,1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 : 1회 사용은 육교의 양면을 사용하는것으로 한다</p> | 기본 사용료 | | 기본사용일수초과시 초과사용료 (매 1일당) | 사용기간 | 사용료 | 7일 이내 | 육교 1회당 21,000원 | 2,100원 | <p>[별표2] 육교사용료산정기준표 (제9조 제3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본 사용료</th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본사용일수초과시 초과사용료 (매 1일당)</th> </tr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용기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용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일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육교 1회당 30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 : 1회 사용은 육교의 양면을 사용하는 것으로한다</p> | 기본 사용료 | | 기본사용일수초과시 초과사용료 (매 1일당) | 사용기간 | 사용료 | 7일 이내 | 육교 1회당 30,000원 | 3,000원 |
| 기본 사용료 | | 기본사용일수초과시 초과사용료 (매 1일당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사용기간 | 사용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7일 이내 | 육교 1회당 21,000원 | 2,1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기본 사용료 | | 기본사용일수초과시 초과사용료 (매 1일당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사용기간 | 사용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7일 이내 | 육교 1회당 30,000원 | 3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